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I 과업개요

1. 과업명 :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 용역

2. 과업기간 : 2026. 8. ~ 12.

3. 사업비 : 100,000천원

4. 과업배경

가. 포항시는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글로벌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 중

나. 본 사업은 외국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민간시행사 및 SPC도 참여하는 복합사업으로, 향후 체결 예정인 MOA 및 최종협약의 법률적 쟁점, 사업참여자별 권리·의무, 국고보조금 지원요건, 공유재산 사용관계, 민간투자 구조 등 사전 검토 필요

5. 과업목적

가.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MOA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사전 검토를 통해 협약 체결 적정성 확보

나. 포항시, 민간시행사 및 SPC, 외국학교법인 등 사업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포항시의 법률·재정·행정적 리스크 최소화

다. MOA 체결 및 최종협약 기본안 협상 지원

6. 과업 추진방향

- 가. 본 과업은 단순한 협약서 문안 검토가 아니라,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사업의 사업구조, 재원조달 구조, 민간투자 구조, 국고보조금 지원요건, 교육청 설립승인 절차, 공유재산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나. 포항시가 사업 참여자인 외국학교법인과 민간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MO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II 과업내용

1. 법률 지원 일반사항

-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협약 체결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 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 검토 및 협상 지원
- 다.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검토 의견 제공
- 라. 발주기관의 법률질의 및 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회의자료 또는 회의 참석 등의 방식으로 수시 자문 제공

2. MOA 및 최종협약 기본안 작성 및 법률 검토

- 가. MOA안 작성 및 최종협약 기본안 작성
- 나. 포항시, 민간시행사, 외국학교법인 등 협약 당사자 역할 및 구성 검토
- 다. 사업참여자별 권리·의무, 책임범위, 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검토
- 라. 국문 및 영문 협약안의 적법성, 정합성, 효력, 해석상 차이 등 검토
- 마. 설립구도에 따른 포항시 재정적·법률적·행정적 리스크 검토

3. 수시 자문 및 협상 지원

- 가. 민간시행사 및 SPC, 영국 본교,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참여
- 나.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질의사항에 대한 상시 자문 및 빠른 회신 지원
- 다. 협상 결과에 따른 협약문 수정
- 라. 협상 이견 발생 및 지연, 조건부 합의 등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4. 민간투자 구조 관련 법률 검토

- 가. 민간시행사 사업 참여 사업구도에 따른 법률 적정성 검토
- 나. 민간투자자 참여에 따른 포항시 재정위험 및 대응방안 검토

5. 국고보조금 및 지방재정 절차 검토

- 가. 산업통상부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지원요건 검토
- 나. 자체 심의기구 심의, 지원대상 검토, 최종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 검토
- 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산 외 의무부담, 지방의회 의결 필요 여부 검토
- 라. 국비·지방비 지원, 사용료 감면, 보조금 지원·집행·정산·환수 관련 조항 검토

6. 기타 법률검토

- 가. 포항시, 민간시행사 및 SPC, 외국학교법인 간 별도 협약 또는 부속합의 필요성 검토
- 나. 필요 시 산업통상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제출용 법률검토 의견서 작성
- 다.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사항 검토

Ⅲ 과업수행 방법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포항시의 공익적 사업목표와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포항시의 법률·재정·행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입장에서 법률검토 및 협상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관계 법령, 정부 및 발주기관의 각종 지침,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 계약서 및 계약 체결 시 추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 가. 용역수행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계획서 및 보고서 등 주요 과업수행계획의 변경
 - 협상방향, 협약안, 검토의견 등 과업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사업참여자와의 주요 협의사항 변경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용역수행기관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나. 진행 과정상 과업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특별한 추가 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용역수행기관은 가능한 한 실행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방법

- 가.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관계 법령, 기존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나.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라.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마.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 또는 사업참여자와의 협의·협상 등을 진행하는 경우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인력 구성 및 운영

-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법률검토, 협약 작성, 협상지원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참여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 및 성과물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5. 과업의 기간·내용 변경 및 조정

-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사업계획·추진일정·협약체결 방향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 또는 사업참여자 협상 과정에서의 사정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또는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나. 과업 수행 중 당초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정이 발생하거나,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용역수행기관의 과오, 오류, 누락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용역 준공 후에도 성과물에 오류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량, 추진일정 및 과업수행 상황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내에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사항, 발주기관 요청사항 및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저작권

- 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나. 발주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권 등 권리 관련 업무를 인계 받는 조직에 귀속됨
- 다.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검토 및 사업참여자와 협의 자료 등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8. 과업 수행의 검사

-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함
- 나.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9. 위반사항 등의 조치

- 가.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용역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나. 참여인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10.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 가.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 참여인력 구성 등 포함
- 나. 중간점검 : MOA·최종협약안 또는 주요 법률쟁점 검토 진행
- 다.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 반영
- 라. 수시자문 :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법률질의, 협상 쟁점, 관계 기관 협의사항 등 자문 및 협상 지원
- 마.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보고 일정 조율

11. 성과품 제출

- 가.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종료 시 의견·검토보고서를 포함한 MOA 및 협약안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진행과정에서 수집·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출력 또는 USB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성과물명		수량	규격	비고
MOA	합의각서 최종안	국문 1 영문 1	A4	한글, PDF 등
	법률 의견·검토 보고서	30부		한글, PDF 등
최종협약	협약서 기본안	국문 1 영문 1	A4	한글, PDF 등
	법률 의견·검토 보고서	30부		한글, PDF 등
최종 성과물		2	USB	협약안 포함 수시 법률 자문 검토 기록 등 모든 성과물이 담긴 USB 제출

12. 과업추진일정

연번	사업내용	사업기간(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착수 및 자료검토	○	○			
2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	○	○	○		
3	사업구조 및 민간투자자 참여구조 검토	○	○	○	○	
4	MOA안 초안 작성 및 검토			○	○	
5	MOA안 및 최종협약 기본안 작성				○	○
6	수시 협상지원 및 법률검토 자문	○	○	○	○	○

13. 기타사항

- 가.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초기 단계부터 발주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지침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행하거나 결정한다.